

청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가단7218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814,429원 및 그 중 10,665,274원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57,718원 및 그 중 42,661,099원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8. 6. 15.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85,000,000원을 이자 연 10.9%, 지연손해금율 연 13.9%, 대출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D은 2020. 5. 14.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0. 5. 18. E과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2024. 7. 11.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미변제 원금 42,661,099원에 미납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한 43,257,71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3,257,718원 및 그 중 원금 42,661,099원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한 면책의 항변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의 주채무 불이행 사실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가 있음에도 그 고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그 미고지로 인하여 피고가 담보물인 건설기계를 매각하는 등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가 면책되고(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 보증채무가 면책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고지 해태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는 면책된다(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E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날짜	통지 내용
2020. 05. 14.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0. 05. 29. 상실될 예정이다.
2020. 11. 09.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0. 11. 23. 상실될 예정이다.
2021. 01. 06.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1. 01. 20. 상실될 예정이다.
2021. 06. 28.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1. 07. 12. 상실될 예정이다.
2021. 12. 21.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2. 01. 04. 상실될 예정이다.
2022. 01. 20.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2. 02. 04. 상실될 예정이다.
2024. 03. 06.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4. 03. 20. 상실될 예정이다.
2024. 05. 10.	E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2024. 05. 24. 상실될 예정이다.

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한 감액의 항변

1) 인정사실

◎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은 제7조 제8항에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20. 7. 14.부터 2024. 6. 24.까지 원고에게 32,103,044원을 변제하였다.

◎ 한편 E은 2018. 6. 28. D에게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한쓰1.8톤너클크레인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8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2024. 7. 31. 위 저당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피고가 2024. 8월 초순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요구하여 원고가

2024. 8. 16. 대전지방법원 F로 위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 피고는 2024. 9. 7.자 답변서로 “기본약관 제7조 제8항에 의한 감액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답변서는 2024.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피고의 답변서의 내용 및 송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주채무자 D이 제공한 담보물이 있으므로, 피고는 기본약관 제7조 제8항에 따라 보증액의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감액 요구가 담긴 답변서를 2024. 9. 9. 송달받았으면 기본약관 제7조 제8항 후문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10. 9.까지 피고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채, 2024. 10. 16.자 준비서면으로 “담보권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감액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약관에 따른 피고의 보증액 감액 요구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고 피고가 그 감액 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그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감액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그 감액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변제한 금액,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는 점, 담보물의 내용, 담보물이 있음에도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비로소 담보권을 실행한 점, 피고의 정당한 감액 요구를 원고가 묵살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항에서 인정한 잔존 대출원리금 보증채무액의 3/4을 감액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1/4 해당 금액만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1) 피고의 ‘보증액 감액의 항변’은 위 인정의 감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14,429원(= 잔존 원리금 43,257,718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0,665,274원(= 원금 42,661,099원 × 1/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대전지방법원 F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가 배당받는 금액의변제충당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이 감소되는 정도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증채무액은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금액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사정으로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음).